

총동문회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본회는 해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총동문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 회원의 단결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사업)

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① 회원 상호 친목도모 및 단합을 위한 행사
- ② 회보, 회지 및 회원명부의 발간 및 배포
- ③ 모교 후배에 대한 장학사업과 교직원에 대한 포상 사업
- ④ 모교 사업에 대한 운용
- ⑤ 동창회 기금의 조성 및 운용

제3조 (위치)

본회의 사무소는 모교 내에 둔다.

제2장 회 원

제4조 (회원의 자격)

-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둔다.
- ② 정회원은 해전대학교 졸업생으로 한다.
- ③ 명예회원은 모교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(고문 및 명예회장 포함)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추대한다.

제5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- ① 정회원은 본회에서 발언권, 선거권, 피선거권, 표결권을 가진다.
- ② 명예회원은 본회에서 발언권을 가지나 선거권, 피선거권, 표결권은 없다.
- ③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본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- ④ 총동창회 임원은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그 의무금은 년회비로 하고 취임 및 중

입, 연임시 각각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<신설2012.03.09.>

- 1.회 장 : 3,000,000원
- 2.수석부회장 : 500,000원
- 3.부 회 장 : 300,000원
- 4.상임 이사 : 200,000원

제6조 (상벌)

회원 및 임원에 대한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재적이사 1/2 이상출석과 출석이사 2/3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.

제3장 조 직

제7조 (지회)

본 회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둘 수 있다.

- ① 지역별 지역동문회 및 지부
- ② 계열(학과)전체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계열(학과)별 동문회
- ③ 직장별 및 직종별 분회

제4장 총 회

제8조 (정기총회 및 임시총회)

- ① 본회에 총회를 두되,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-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본회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정기총회는 년 1회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.
- ④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또는 상임이사회의 1/2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.

제9조 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- ①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의결
- ② 임원선출
- ③ 결산보고
- ④ 기타 중요한 사항

제5장 상임 이사회

제10조 (상임이사회의 구성)

상임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,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
제11조 (상임이사회)

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상임이사1/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.

제12조 (상임이사회의 기능)

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- ① 회칙의 제정 및 개정안 심의
- ②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의결
- ③ 임원 선출에 대한 사항
- ④ 예산안의 편성 및 의결
- ⑤ 사업계획의 수립
- ⑥ 기금의 조성, 관리, 운용에 관한 사항
- ⑦ 회비에 관한 사항
- ⑧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
제6장 임 원

제13조 (임원의 종류)
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① 고문 약간명
- ② 명예회장 1명
- ③ 회장 1명
- ④ 부회장 약간명
- ⑤ 운영위원 약간명
- ⑥ 상임이사 약간명(각 과(계열)별과 기수별로 구분하여 둔다)
- ⑦ 사무총장 1명, 사무차장 1명(개정2011.01.18.)(개정2012.03.09.)
- ⑧ 재무국장 1명(개정2012.03.09.)
- ⑨ 홍보국장 1명(신설2011.01.18.)(개정2012.03.09.)
- ⑩ 감사 2명
- ⑪ 간사 1명
- ⑫ 기타 본회의운영에 필요한 부서 및 인원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.

제14조 (임원의 선출)

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에게 위임한다.

제15조 (임원의 임무)

-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집행한다.
- ④ 간사는 각종 문서의 수발 및 장부기록, 보관, 정리한다.
- ⑤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
제16조 (회장의 임기)

-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
-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임시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후임자를 선출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7조 (임기의 종료)

임원의 임기가 끝난 후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.

제7장 의사운영

제18조 (의안 작성)

총회 및 임시회의 의안은 사무국장이 작성한다.

제19조 (의결)

본 회칙에 의거한 의사 운영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일의 처리 및 회칙 개정에 관한 결의에 한 하여는 출석회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요한다.

제8장 재 정

제20조 (재정)

본회의 재정은 입회비,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21조 (회비)

입회비는 영구회비로 하고 회비, 입회비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22조 (회계년도)

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9장 회칙 개정

제23조 (회칙개정)

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50인 이상의 발의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이를 의결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본 회 회칙은 총회에서 제정 통보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본회의 회칙 중 상임이사가 차기 회장 및 감사를 추천하게 되어 있으나 발기위원회(간사 모임)에서 선임된 이사를 상임이사로 본다.

제3조 (시행일)

이 회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4조 (시행일)

이 회칙은 201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5조 (시행일)

이 회칙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